#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78

발의년월일 : 2023. 2. 15.

발 의 자:대구광역시의회

운 영 위 원 장

### 1. 개정이유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1.5.18.공포, '22.5.19.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에서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삭제·정비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일원화됨.
- 나. 이에 본 조례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 대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시행(2022.9.20.)
-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함(안 제명)
-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조항 삭제(현행 제4조)
- 다.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제출 조항 삭제(현행 제4조의2)
- 라.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조항 삭제(현행 제4조의3)
- 마. 가족 채용 제한 조항 삭제(현행 제4조의4)

-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 삭제(현행 제4조의5)
- 사.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조항 삭제(현행 제10조)
- 아. 부당행위 전가를 금지하는 대상기관의 구체화(안 제10조의3)
- 자.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조항 삭제(현행 제16조)
- 차. 명절기간 한정. 수수가능한 선물 가액범위 상향(안 별표1)

### 3. 참고사항

가.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제10조의3 등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을 "대구광역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제3호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대구광역시의 집행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0조의3제4호 중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별표 1]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 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 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제1조(목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	
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u>대구광</u>	대구광
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역시의회의원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u>대구광역시의회 의원</u>	1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	
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	
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	
인·단체를 말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u>〈삭 제〉</u>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	
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되 소과 상인위	

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 단 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 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 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 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 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 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 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
-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 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 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

   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

   이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삭 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 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 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 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 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 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 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 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했던 법인 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 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 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 \ 〈삭 제〉 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 가를 받는 행위

-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 ·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 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 〈삭 제〉 의회. 시 및 시의 산하기관(「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삭 제〉 의원은 시의 산하기관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

- 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 〈삭 제〉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 2. (생 략)
- 3.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 인력을 부담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 부당 행위의 금지) ------
  - 1. ~ 2. (현행과 같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가. 대구광역시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 〈신 설〉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의 권리 ·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 〈삭 제〉

-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 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 고해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u>시가 3</u>	관계 법	령에	따라	업무	-를
	관장히	는 공	공기관	<u>1</u>		
다.	「공직	자윤리	l법」	제32	<b>조</b> 의2	검제
	1 리 제	~l =			า -ท	7

1항에 따든 공식유관단체 중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제3호 각 목의
<u>기관 또는 단체</u>

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 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 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 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 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 런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 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

에서 제외한다.

-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 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 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관계 법 령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2.〉
  -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 요구를 하는 행위
  -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 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 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 [별표 1]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 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